

공고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고 제2026-69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기간제근로자(통계조사관) 추가채용 공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조사관(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부문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인원
				장애인전형
통계조사관	현장조사 및 검토관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현장조사 수행, 조사표 입력, 내용검토 등	'26. 11. 2. ~ 12. 17.	1명

- *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모집시기, 인원, 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 일반 전형 및 장애인 전형으로 구분 모집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
우대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 직무 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Ⅲ 근무조건

- 근무예정부서: 지역협력과(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 보수수준: 일급 78,560원 (식비 월 16만원 별도 지급(식비는 일할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계약기간: 2026. 11. 2.(월) ~ 2026. 12. 17.(목)

※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모집시기, 인원, 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Ⅳ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 전형	면접 전형
▲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 서류전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6. 10. 8.(목) ~ 2026. 10. 14.(수) 18:00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제출 • 안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및 e-채용마당 공고 • 지원서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하여 접수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을 통한 원서 접수는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6.(금)	• 안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6. 10. 20.(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 안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V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직무별 (서류전형)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가산점 부여 - MOS-Excel, ITQ-Excel,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산업기사) * 1개 보유 시 5점, 2개 이상 보유 시 10점 서류전형 가점 - 통계 관련 교육 이수자 및 근무 경험자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VI

지원서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는 **워크넷 e-채용마당**에 입력·접수하고, '정보활용 동의서'는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고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제출 서류	대상
NCS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 지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통계 관련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전형 시 제출
모집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 가족증명	면접전형 시 제출
---	-----------

VII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간(반환 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결과 지원자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서류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고,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031-463-7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